

‘반쪽 전략’ 5·18기념행사, 올해는 하나되어 치르나

공법3단체 “지난 일 유감…44주년 행사 시민과 함께할 것” 참석 밝혀 5·18행사위 의견 수렴 후 결론 내기로…갈등 딛고 위상 찾을지 주목

오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 간 갈등으로 분열됐던 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5·18행사위)가 제모습과 위상을 갖추게 될지 주목된다.

5·18 공법 3단체(5·18유공자회,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올해 행사위 참여 의사를 전격 표명하면서 지난해 ‘반쪽짜리’로 전략했던 5월 행사가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18공법3단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5·18행사위가 개최하는 제44주년 5·18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18행사위는 지난 1993년 출범 이후 5·18전야제를 비롯한 각종 민간 주도 5·18 기념 행사를 운영해 온 민간 단체다.

공법 3단체는 입장문에서 “5·18공법3단체와 기념재단은 시민계 심려를 끼쳤던 지난 일들에 대해 마음 깊이 유감을 표시하며, 2024년 제44주년 기념행사부터 시민을 모시고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18기념재단과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양재혁 5·18유족회 회

장과 윤남식 5·18공로자회 회장이 각 단체의 뜻을 모았으며, 신인 지도부가 꾸려지지 않은 5·18부상자회는 회의 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위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법3단체는 5·18행사위가 주최하는 5·18 기념행사에 불참했다.

지난해 2월 19일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사)특전사동지회와 화해 행사 명목으로 ‘대국민 공동선언서’를 발표했다. “지적을 받았다. 두 회장은 “5·18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일부 정치색을 가진 단체가 주도해 영리 활동을 하는 불법 단체”라며 맞받아치는 등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5·18행사위는 두 공법단체를 행사위에서 제명했다. 5·18유족회 또한 두 공법단체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불

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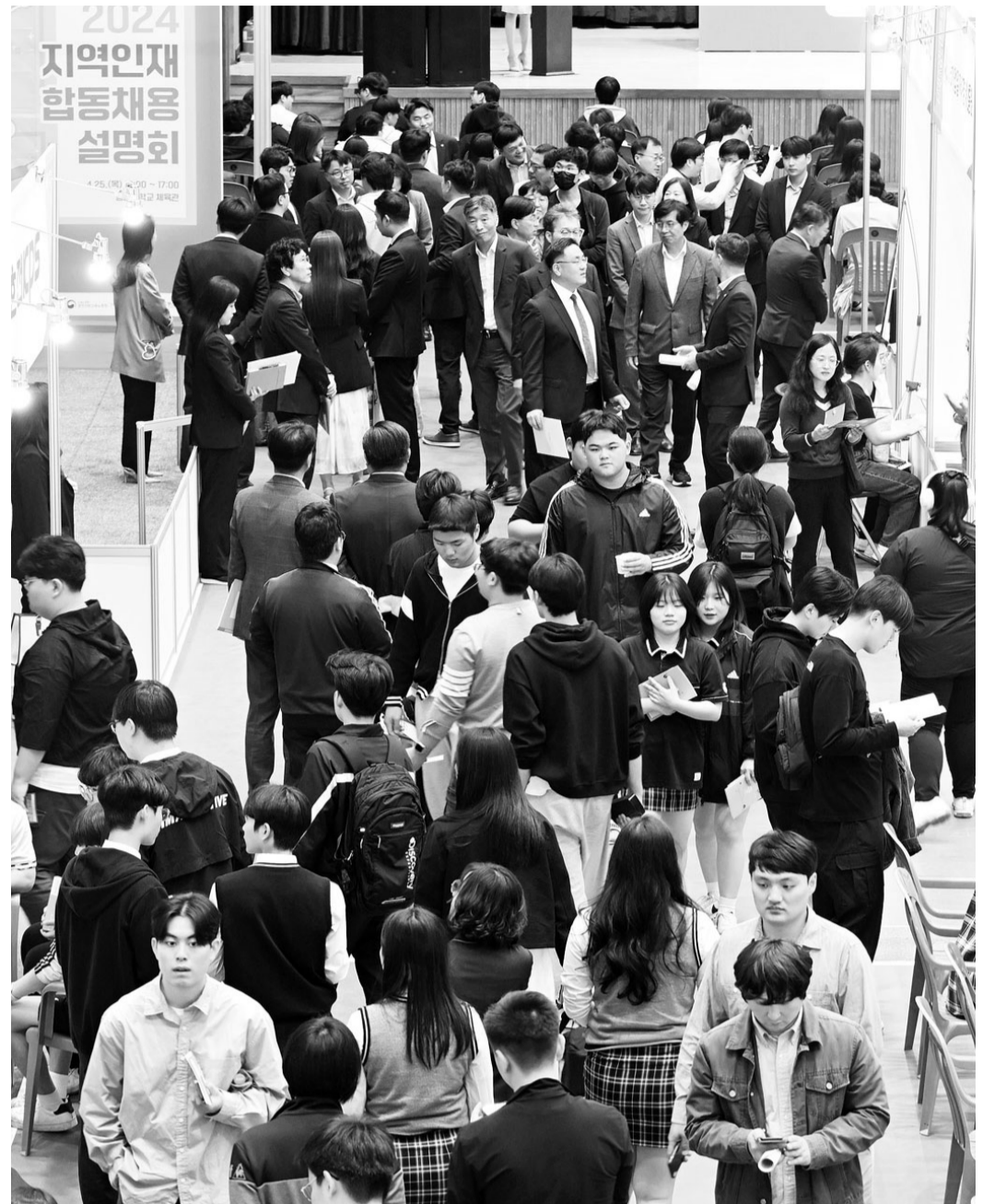
5·18행사위는 제명 조치 이후 “두 공법단체가 공동선언문을 폐기하고 공식 사과한다면 제명 조치를 풀고 5·18 행사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행사위 일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각 단체가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추모제(5월 17일), 민주기사의 날(5월 20일), 부활제(5월 27일) 등 행사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제공할 방침을 정했다.

5·18행사위는 공법3단체의 행사 참석 여부와 관련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행사 운영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순 5·18행사위 집행위원장은 “분열되지 않는, 하나의 광주라는 뜻에서 공법3단체의 행사 참여 의사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사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동선언문이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 한편, 전임 회장들의 오점을 후임자들이 떠맡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법3단체의 뜻에 맞춰 함께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에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내 일자리는 어디에 25일 나주시 동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 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대학생과 졸업생, 취업준비생 등 1500여명이 몰려 생황을 이루고 있다. 행사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11곳, 유관기관 4곳 등 모두 28개 관련 기업이 참가해 공공기관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대병원도 ‘주 1회 휴진’ 도입한다

의대 비대위 설문 82.3%찬성...응급·중증 관련 진료과는 제외

전남대학교 병원도 ‘주 1회 정기 셧다운(휴진)’을 도입한다.

25일 전남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전대 비대위)에 따르면 셧다운 시행을 위해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82.3%가 찬성에 응했다.

설문에는 전임교원·임상교수 420명 가운데 232명이 참여했다. 200여명에 가까운 교수가 주 1회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데 찬성한 것이다.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이 정신적, 신체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진의 피로가 지속되면 환자에게도 위험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것이 전남대 의사들의 설명이다.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전국 의대교수비대위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셧다운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전대 비대위 측의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개별 교수들에게 주 1회 휴진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 1회 정기 휴진이 시작되더라도 필수의료인 응급·중증 관련 진료과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다음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건 브로커에 금품 받고 정보 유출 검·경 관계자 11명 모두 유죄 선고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거나 건넨 검·경 관계자 11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25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산하 지정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수사관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법률 조언 및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로 기소됐다. 같은 날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제3차 뇌물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2건의 재판에서 전남경찰 출신 브로커 A(6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성씨에게 징역 1년,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5명과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전직 경찰과 건설업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거나,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현직 경장·경감 5명과 성씨·A씨는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3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사 청탁으로 받은 총 1억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수고비로 챙기고 1억여원은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청장은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경찰들은 승진 명목의 뇌물을 주고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관행으로 생각했고 승진 우선순위에 있는 예정자들을 탈락시키는 등 경찰 공무원 승진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매관매직 관행은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형제자매에 유산 상속 강제 ‘유류분’은 위헌”

현재, 패륜 가족 상속권도 박탈

헌법재판소가 유산을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에 맞게 상속(유류분, 遺留分)하게 하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25일 민법의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

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현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보장한 민법 1112조 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1112조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현재는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가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가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02-747-1367